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29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12. 19.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23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제1차조례특위(2000.12.26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가. 제 안 이 유

- 생활보호법 폐지에따라 조례상“생활보호대상자” 명칭을
“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”로 변경

나. 주 요 골 자

- 학자금 용자대상인 “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”에서
“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”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
1 시행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
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붙임 :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10부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